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단
법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전국병원장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47, 348호 (2024.5.8.)

2.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(E : yjkim@kha.or.kr)으로 2024.5.31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정안 주요 내용

가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(2024-347호)

-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'임종실' 항목 신설(안 별지 제14호 및 제17호 서식)

나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2024-348호)

-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조건 이외에도 본인부담률,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·항목·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함
- 선별급여 중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직권결정을 통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함
- 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

붙임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각 1부.

※ 붙임자료는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 다운로드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차장 김영진 팀장 노환우 제2국장 정교숙 제1국장 류향수

시행:보험 제 2024-177 (2024.05.09)

우편번호 04165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

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5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59) E-mail : yjkim@kha.or.kr